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행금지국가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근거 마련 >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06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 개관	2
2. 여행금지국가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근거 마련 ...	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기웅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3.

다. 회 부 일 : 2025.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2022~2024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는 총 1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이동통신 3사의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20,171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또는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Ⅲ. 검토의견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 개관

‘통신이용자정보’¹⁾ 제공 제도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²⁾에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이용자의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아이디, ⑥ 가입일 또는 해지일이 포함됨.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통신일시 및 발·착신 번호 등 구체적인 통신행위에 관련된 정보인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³⁾와 구분되는

1) 2023.12.29.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자료”라 칭함.

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3)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개념임.

‘통신이용자정보’의 경우에는 법원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수사기관 등의 실무적인 협조요청만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

<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비교 >

구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3조, 제13조의2 등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제공범위	이용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이용자 식별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특정인의 통신사실 자료 - 가입자의 통신일시, 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사용도수, 컴퓨터 통신·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정보통신기기 접속지 위치추적자료
요청주체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사전절차	-	- 검사·사법경찰관: 법원 허가 - 정보수사기관: 고법수석부장판사 허가
사후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황 보고 - 가입자에게 통지(23.12.29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황 보고 - 가입자에게 통지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2. 여행금지국가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근거 마련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2022~2024년)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17,730건)보다 여행금지 국가 로밍 이용 건수(20,171건)가 더 많고,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당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통신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 ③ (생략) <u><신설></u>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교부장관이 「여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한 국가나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가입일”은 “이용자가 해당 국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 서비스를 신청한 일자”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연관성(제4항
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⑦ _____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⑨ (생략)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제6항에-----
-----.

⑧ -----제3항 및 제4항에-----
-----제6항에-----
-----.

⑨·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 및 외교부장관은-----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
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
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
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2. (생략)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
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
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
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 ⑧ (생략)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

-----.
-----.

1. 2. (현행과 같음)

⑥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

-----.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수사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략)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략)
③ 제83조의4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

1. ~ 4. (현행과 같음)

②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

1.·2. (현행과 같음)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의-----

④ (현행과 같음)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12. (생략)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

제94조(벌칙) -----

-----.

1. 2. (현행과 같음)

3.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83조제6항을-----

14. 제83조제8항을-----

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 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 ~ 17. (생 략) ⑥ (생 략)	----- ----- 15.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

□ 검토사항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별도의 사전적 절차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 동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 동남아 일부 여행금지·경보 지역에서 납치·감금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여행금지국가 등에 체류 중인 국민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면 사건 발생 시 조기 대

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응과 현지 공관·치안당국과의 신속한 공조가 가능하므로, 국민 보호 측면에서 타당성을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행법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외 체류 중인 국민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현행법상 재판·수사·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요청에 따라 여행금지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열람·제출받는 것이 가능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동 개정안은 수사·형 집행 등 기존의 법적 사유 외에 ‘국민 보호 필요성’에 기반한 행정 목적의 경우에도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를 열람·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임.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외교부가 형사절차 또는 국가안보 목적이 아닌 ‘국민 보호’라는 사유만으로 정보통신 사회에서 개인의 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현행법의 형사절차나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을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단하여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⁵⁾고 명시하고 있어 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나, 동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 강행 규정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보다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더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으로도 수사기관(법원, 검사 또는 수사 관서,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통해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이 가능하다고 봄.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는 재량인 반면, 동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로 규율하고 있어, 해당 부분은 과잉 금지,

5)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죄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인 외교부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0조제4항⁶⁾은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별도의 동의나 요건 없이 외교부장관의 요구만으로 특정 통신이용자 정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내국민 보호를 위한 기존 조치 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해보면 동 개정안은 여행금지국가 체류 국민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납치·감금 등 사건 발생 시 외교부의 조기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보호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사생활 보호 취지에 비추어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해외 체류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소관 부처 등의 외교부장관 요구만으로 특정 통신이용자 정보

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0조(영사조력의 기본원칙) ④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과잉금지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